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44 제출년월일 : 2014. 8. 8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 등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함 (안 제6조의2)
- 나. 융자 규모의 적정 여부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(안 제7조제2항)
- 다. 상위법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)를 의무화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(안 제10조)
- 라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 수정(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, 안 제9조, 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관리기금"을 "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(이하 "관리기금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기타"를 "그밖의"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관리기금의 용도)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

- 1.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도
- 2.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의 융자
- 3.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
- 4.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
- 5.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

6.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

제4조제1항 중 "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"을 "기금"으로, "있다고"를 "있다고 제6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여유자금이라함은"을 ""여유자금"이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기타"를 "그밖에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제4조 규정에 의하여"를 "제4조에 따라"로, "1월"을 "1개월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"기금 등이"를 "기금 등의"로, "위원회"를 "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규정에 의한 이자율"을 "이자율"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7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1인"을 각각 "1명"으로, "9인"을 "9명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각호에 정한 자로"를 "각호에서 정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, "위촉하는 자"를 "위촉하는 사람"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중 "기금운용계획안"을 "관리기금운용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융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 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의 제목"(기금결산)"을 "(관리기금결산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 항 중 "기금결산"을 "관리기금결산"으로 한다.

제9조 중 "운용·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"를 "운용·관리하며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"로 한다.

제10조 중 "시행에 관하여"를 "시행에"로 하여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혅 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 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 에 의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관리하고 있 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 적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 기금(이하 "관리기금"이라 한 다)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 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관리기금의 재원) 관리기금 | 제2조(관리기금의 재원) 인천광역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하다.
 - 1. ~ 3. (생 략)
 - 4. 기타 수입금
- 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 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 업에 융자할 수 있다.
 - 1.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 는 자금의 융자

개 정 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 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|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 · 관리하 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 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시 통합관리기금(이하 "관리기 금"이라 한다)-.
 - 1. ~ 3. (현행과 같음)
 - 4. 그 밖의----
- 제3조(관리기금의 용도) 각 기금 제3조(관리기금의 용도) 관리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
 - 1.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 도

- 2.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
- 3.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 의 융자
- 4.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 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.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

용관리를 위한 경비

- 제4조(관리기금에의 예탁) ① 시 제4조(관리기금에의 예탁) ① ---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 계로 설치 · 운용하는 기금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 고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 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 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 -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 | 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. 1. (생략)

- 2.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 는 자금의 융자
- 3.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 자
- 4.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 다)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 의 융자
- 5.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 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6.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
-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

<u>기금</u> -	

•		

 있다고

제6조에	따른	

- ② ----- "여유자금"이란--
- 1. (현행과 같음)

2. <u>기타</u>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 2. <u>.</u> 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여 - 유자금 - 제5조(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) ① 제5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 제4

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

1월 이상으로 한다.

-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 는 국·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이 금융자산 운용 수익 률 등을 고려하여 <u>위원회</u>의 심 의를 거쳐 정한다.
- 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<u>규정</u> 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 략) 저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다.
- 1. ~ 6. (생략)
- 7. <u>기타</u> 관리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<u>1인</u>과 부위 원장 <u>1인</u>을 포함한 <u>9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

2. <u>그 밖에</u>
세5조(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) ①
제4조에 따라
1개월
②
기금 등의
<u> </u>
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
③
이자
<u>율</u>
세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
같음) ②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그 밖에</u>
_
③ <u>1명</u>
<u>1명</u> <u>9명</u>

기획관리실장이 되며, 위원은 -----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. 1. (생략)

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<u>는 자</u> <신 설>

- 제7조(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) 제7조(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금운용관을 지정해야하 며.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기금 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④ (생 략)

----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그 밖에 -----

----- 위촉하는 사람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 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 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 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 촉 해제 될 수 있다.

- ----- 관리기금운 용계획----.
-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 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, 융자 규모의 적정 여 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.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<u>(기금결산)</u> ① 관리기금운용 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<u>기금결산</u>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삭 제

제9조(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관리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·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있다.

<신 설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</u>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관리기금결산) ①
관리
<u>기금결산</u>
② 삭 제
제9조(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
<u>운용·관리하며</u> 「지방재
정법」제34조에 따라 세입・세
출예산 외
.
제10조(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이
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
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u>제11조</u> (시행규칙) <u>시</u>
<u>행에</u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○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○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○ 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○ 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○ 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"세부사항 별지 작성"
관련법규 정비대상	"해당사항 없음"
특이사항	"해당사항 없음"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-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- 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-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- 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